

광주지방법원 2021. 10. 22 선고 2021가단50287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우

담당변호사 조준행

변 론 종 결 2021. 8. 27.

판 결 선 고 2021. 10. 22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가. 피고 B와 소외 D 사이에 2017. 8. 14., 2017. 9. 6., 2017. 10. 7., 2017. 11. 12., 2017. 12. 8. 각 체결된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나. 피고 B은 원고에게 11,587,4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

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가. 피고 C와 소외 D 사이에 2020. 1. 29. 체결된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나. 피고 C는 원고에게 16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소외 E 유한회사는 소외 D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4849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1. 7. 1. ‘D은 E 유한회사에게 30,506,917원 및 그 중 20,450,000원에 대하여 2011. 6. 1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’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, 위 지급명령은 2011. 8. 23. 확정되었다.

나. 그 후 위 지급명령상 채권(이하 ‘이 사건 채권’이라 한다)은 F 주식회사를 거쳐 2015. 1. 2. 원고에게 양도되었다.

다. 피고 B은 D의 자녀이다. 피고 B 명의의 G은행계좌((계좌번호 1 생략), 이하 ‘이 사건 제1 계좌’라 한다)에서 2017. 8. 14. 87,495원, 2017. 9. 6. 3,000,000원, 2017. 10. 7. 3,000,000원, 2017. 11. 12. 3,000,000원, 2017. 12. 8. 2,500,000원의 합계 11,587,495원이 위 피고 명의의 다른 G은행계좌(계좌번호 2 생략), 이하 ‘이 사건 제2 계좌’라 한다)로 각 이체되었다(이하 ‘이 사건 각 이체금원’이라 한다).

라. 피고 C는 D의 배우자이다. 피고 C는 파주시 H아파트 I호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0. 3. 9. 소외 J으로부터 2020. 1. 29.자 매매(거래가액 236,500,000원)를 원인으로 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위 피고는 2020. 3. 9. K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19,600,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83,000,000원을 대출받았다(이하 ‘이 사건 대출금’이라 한다)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(청구원인) 요지

①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제1 계좌는 실제로는 D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이다. 따라서 이 사건 제1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제2 계좌로 합계 11,587,495원이 이체된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,587,495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②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236,500,000원에 매수하였다. 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183,000,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, 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졌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53,500,000원(= 236,500,000원 - 183,000,000원)은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. 따라서 2020. 1. 29.(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일)자 금전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16,000,000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, 이 사건 각 이체금원이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금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이 사건 각 이체금원이 D과 피고 B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른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, 을 제5호증의 1, 2,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이체금원이 증여의 성격을 가진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.

따라서,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.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 피고 C가 D으로부터 53,500,000원을 증여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금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을 제5, 12호증의 각 1, 2,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피고 C가 D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.

따라서,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용태